글_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이번호부터 (사)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함께 건강한 DC(Digital Contents)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Q&A 코너로 구성하여 연재합니다.

언젠가부터 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등으로 콘텐츠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력유출과 소스 보호 등을 위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건강한 DC 유통 환경 만들기**

Q1 회사에서 개발하여 보유중인 게임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질적 재산권 보유관계와 소스보호 방법을 위한 방안

A

회사를 통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경우 실질적 재산권 보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업체, 개발자)

–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당해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개발자에게 있음.

– 그러나, 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지시와 비용으로 창작한 노력의 결과는 사용자가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규정임.

→ **결론적으로 업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할 것

(2) 법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일 것

(3)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Q2 업체에 근무하던 기술자가 퇴직하여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 기존 업체의 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A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업체에 귀속된다면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등록절차 진행) 추후 다른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데 제시할 수 있다.

– 그리고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기존 업체의 기술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음.

– 이러한 사후적인 방안 이외에 사전적인 방안으로서 기술자에게 다른 업체에 취업할 때 기존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존업체에서 개발 및 보유한 프로그램소스 등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사전적인 방안으로 기술자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 시 근무 중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함.

(2)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Q3 근무 중인 병역특례인원들의 특례기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A

보통 프로그램 개발에는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며,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기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병역특례요원들이 전직을 하는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의무전직, 승인전직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승인전직으로 보이는 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때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길 수 있다. 사실상 해당인원의 이직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KIBA